

##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

### □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#### 1. 이용목적

- 가.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- 나. 채권추심
- 다. 마케팅
- 라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#### 2. 신용정보의 종류

##### 가. 식별정보

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 법인 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
##### 나. 신용거래정보

###### - 개인신용거래정보

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

###### - 기업신용거래정보

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 대지급정보, 어음 수표 부도정보,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

##### 다. 금융질서문란정보

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##### 라. 신용능력정보

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
##### 마. 공공기록정보

국세.지방세.관세.과태료.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### □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가. 제공대상자

- 전국은행연합회, 한국신용평가정보(주), 한국개인신용(주),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
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·수집·보관·제공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식별정보
- 신용거래정보
- 금융질서문란정보
- 신용능력정보

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- 보유 및 이용기간 : 상품폐쇄후 5년까지
-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: 상품폐쇄후 5년 경과시 파기

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
- 해당사항 없음

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가. 본인신용정보 제공·열람청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나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다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라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등을 통회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신용정보관리 보호인

- 성명 : 송형진

- 직책 : 준법감시인

- 전화번호 : 02-788-7007

- FAX : 02-788-7165